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1994. 12

최수영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경제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 이래 추진해 온 대외 경제개방정책 및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남북경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과 남북경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김정일 정권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있다.

북한경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4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에서 탈피하고자 북한의 경제정책은 변화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래 대외경제정책에서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둔화와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후퇴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 등과 같은 체제 불안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체제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통해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러한 대외경제개방의 폭을 확대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경제개방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추진되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자도입이 불가피하고 외자도입을 위해서는 대외개방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외경제개방과 함께 침투될지도 모를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북한 당국은 대외개방을 실시함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외적인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다.

최근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농업·경공업·무역의 3대제일주의를 북한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대제일주의의 경공업부문은 외자유치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무역부문은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도 결국은 향후 북한이 취할 대외경제개방의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합영사업을 통한 북한의 외자유치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낮은 대외신용도, 경직된 경제관리운영체계,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좁은 내수시장 등은 투자대상 후보지로서의 매력을 외국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북한의 투자환경은 저

임노동력과 일부 자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인접한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비교하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흡한 투자환경을 북한이 지금 당장 바꾸어 놓을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설치한 이후에도 1970년대 중반 이래 누적되어 온 서구 선진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제관리운영체계에 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낮은 대외신용도 및 경직된 경제관리운영체계 등은 북한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북한은 에너지 및 원자재를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우선 공급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외자유치 분야를 경쟁력있는 수출산업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좁은 내수시장과 관련한 투자여건에서의 불리함을 비껴갈 수도 있다.

북한은 1992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외자유치 관련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오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이 더욱 보강되어야 하겠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이미 외자유치를 위한 골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

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 단지 개방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부개혁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투자환경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대외개방을 시작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환경이 미흡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계기로서 개방을 선택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안고 있는 투자환경 면에서의 불리한 점들이 외자유치를 근본적으로 제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북한은 점진적인 대외경제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은 대외경제관계, 특히 미국, 일본과의 경제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한기업과의 교류·협력에도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제고하여 북한이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해 나가자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하고 추가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주력하고자 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북한은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지속해 왔다. 더구나 개방에 걸맞는 내부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방과 개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없는 투자여건상의 불리함을 다소라도 만회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내부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目 次

제 I 장 머리말	1
제 II 장 80년대 제한적 대외개방	4
1. 배경	4
2. 「합영법」 실시	6
3. 합영사업 추진	8
가. 전개과정	8
나. 성과	16
다. 문제점	22
제 III 장 90년대 제한적 대외개방	25
1. 배경	25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28
가. 추진 현황	28
나. 주요 내용	31
다. 문제점 및 평가	37
3. 외자유치 관련법 정비	39
가. 정비 현황과 법적 체계	39

나. 의의 및 특징	43
다. 문제점	47
제 IV 장 대외무역동향과 남북경협	51
1. 대외무역동향	51
2. 남북교역의 현황과 특징	56
가. 전개과정	56
나. 남북교역 현황	57
다. 남북교역의 특징	63
3. 남북경협외 과제	66
가. 현안과제	66
나. 대북진출 전략	70
제 V 장 대외경제개방정책 전망	76
1. 대외경제관계 증진	76
가. 대미·대일 경제관계 개선	76
나. 남한기업과의 경협 증진	77
2. 무역제일주의 관철	80
3.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84
가. 추가지정	84
나. 기존 개발계획 조정	86

다. 시장경제원리 도입	88
제 VI 장 맺음말	90
참고문헌	93

제 I 장 머리말

북한경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4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에서 탈피하고자 북한의 경제정책은 변화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래 대외경제정책에서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둔화와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후퇴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 등과 같은 체제불안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체제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방식의 제한적 대외개방의 성공은 북한의 당면한 경제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미 회담이 타결된 지금 남북경협의 진전과 함께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도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통해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러한 대외경제개방의 폭을 확대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경제개방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추진되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그러한 경제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북한이 선택한 경제정책은 과연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렇지 않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경제난 타개를 위해 외자도입이 불가피하고 외자도입을 위해서는 대외개방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외경제개방과 함께 침투될지도 모를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북한 당국은 대외개방을 실시함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외적인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다.

최근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농업·경공업·무역의 3대제일주의를 북한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대제일주의의 경공업부문은 외자유치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무역부문은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도 결국은 향후 북한이 취할 대외경제개방의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198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이 제한적인 대외개방의 시도로서 추진해 온 합영사업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Ⅲ장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한적 대외개방 확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외자유치 관련법 정비를 다루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동향과 남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

는 경제협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제 V장에서는 앞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정책 성공의 선결조건은 맺음말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제 II 장 80년대 제한적 대외개방

1. 배경

북한경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채택해 온 대중동원 방식의 외연적 성장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부진은 북한이 사회주의 발전 전략에 따라 생산재부문의 생산에 치중함으로써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줄어들게 되자 북한은 제 1차 7개년계획(1961~1967)을 3년간 연장하게 되었다.

한편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선진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6개년계획(1971~1976)기간 동안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과의 무역확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대적인 기계, 설비 등 자본재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외채누적과 대외신용의 상실을 가져다 주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했던 북한으로서는 제1차 석유위기에 따른 주력수출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수출부진으로

인한 외화부족으로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 선진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금은 물론 이자지불까지 연체하게 된 북한은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신규차관 도입이 어렵게 되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도 부진을 면할 수 없었다. 이후 1980년 10월 제 6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대외교역의 대서방 전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서구 선진국과의 교섭을 다시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의 마지막 해인 1984년에 와서도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놓지 못할 만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되자 경제성장 둔화를 탈피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구로부터의 차관도입을 대신할 새로운 외자유치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과의 합영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해 이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79년 8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의 성과에 북한이 고무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합영법」 발표 직전인 1984년 8월에는 정무원 총리 강성산이 경제각료와 함께 상해의 생산시설과 건설현장을 시찰한 바 있으며, 1983년 4월과 7월 사이에는 50여명의 고위급 인사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경제특구를 방문하는 등 중국의 실용주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고조되어 왔다.¹⁾

2. 「합영법」 실시

북한의 「합영법」이 갖는 의의는 개인과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경제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민간사업의 주체를 인정하고 합작투자기업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세의 성격을 띠는 거래수입금을 부과하고 있던 북한에서 합작투자기업과 그 종사자에게 직접세인 소득세부과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²⁾

한편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영법 제5조)함으로써 해외

1) 한국무역협회, 「北韓의 合作投資制度 -北韓의 合營法規-」(서울: 한국무역협회, 1991), pp. 5~6.

2) 위의 책, p. 8.

동포, 특히 재일조선인 자금의 유치를 도모하여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도 「합영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영법」에 따르면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상 합영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합영법」(시행세칙 포함)의 내용에는 합영회사 설립시 계약에서 승인까지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고, 북한의 출자가 예상되는 토지·건물 등 화폐외의 출자목적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확실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합영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이 전원일치제로 되어 있어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북한산 원자재의 구입을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종업원의 고용이나 해고 등에 있어서의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합영법」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을 알 수 없어 이 제도의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북한은 「합영법」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1985년 5월까지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과 동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과 동법세칙을 발표하였다. 이들 법규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많아 법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합영관련법에 비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세제상 대체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합영회사의 법인소득세가 북한은 순소득의 25%이지만 중국은 33% (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율도 북한은 최고 30%이나 중국은 최고 45%로 북한에 비해 높다.³⁾

3. 합영사업 추진

가. 전개과정

「합영법」이 공포된 후 체결된 최초의 합영계약은 평양에 세워질 양각도호텔에 관한 것으로 1984년 10월 8일 프랑스의 쾰뻬농베나르사(The Companon Bernard Construction Company)와 북한의 조선제일설비수출입회사 사이에 이루어졌다. 양측이 반반씩 투자하여 2년 7개월 후에 완성될 예정이었던 46층 건물인 양각도호텔의 건설은⁴⁾ 프랑스측이 기술자를 철수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한다.⁵⁾ 경영권에 관한 양측의 분쟁과 북한측의

3)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 67.

4) *Vantage Point*, vol. XI, no. 10 (October 1988), p. 22.

5)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在日朝鮮人との合弁事業を中心に-,”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2年版-」(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2), p. 134, 注 18.

계약 불이행이 공사중단의 이유로 알려져 있다.

1985년 2월 18일 문을 연 락원백화점은 북한의 락원무역상사와 조총련 기업인 조일상사의 합영기업으로 평양에 본점과 전국에 31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락원카드까지 발행하고 있다. 락원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일본 제품이며,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은 북한의 특권층이거나 외교관, 외국인 관광객(재일 조선인 방문객 포함), 외국상사 주재원들이다. 재일 조선상공인연합회의 이종태 부회장과 평양시 대외봉사총국의 합영으로 5월에 문을 연 음료와 경양식을 봉사하는 창광커피숍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양을 방문하는 재일 조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비록 법시행의 초기단계라고는 하지만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영법」 제정 이후의 2년 동안 북한이 유치한 합영사업의 실적은 6건에 불과하였으며,⁶⁾ 그나마도 양각도호텔을 제외하고는 조총련과의 합작이 전부였다. 북한은 기대했던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합영사업에 있어서 조총련의 잠재력만 확인하게 되고, 따라서 북한은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였다.

6) 金道卿·申愨榮,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서울: 력키금성經濟研究所, 1992), p. 48.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1986년 2월에 김일성은 북한을 방문한 조선상공인연합회의 대표단에게 북한과의 합영, 합작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달라는 강령적 교시(2·28 교시)를 내린 바 있다.

북한과 조총련 기업의 합영사업 전담기관인 조선국제합영총회사는 1986년 8월 창립에 관한 조인을 하고 11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합영사업준비위원회와 조총련의 합영사업연구회가 각각 60만 달러의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이 회사의 기능은 회사라는 명칭과는 달리 조총련 기업인의 북한내 투자를 유도하여 북·조(북한과 조총련) 합영사업을 촉진하고 기업운영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정치적인 중요성과 영향력은 이 회사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에 북한과 조총련 쌍방의 최고책임자가 취임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⁷⁾

1987년 초에는 합영과 관련하여 북한의 기술대표단이 일

7)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Domest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1990's, Sponsor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Unification Board (July 12-14, 1991), p. 16;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p. 125.

본을 방문하고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주최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경공업제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은 북·조합영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해 11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2차 이사회에서는 24건의 합영계약과 11건의 합의서 교환이 이루어져 조총련의 자본과 기술도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북한은 조총련과 100여건의 합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김성환 합영공업부 부부장이 말할 정도로 북·조합영사업은 초기에 비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모란봉합영회사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1차 이사회 결정 아래 설립되어 1987년 4월에 대동강구역의 제1공장이, 1988년 9월에 동대원지구의 제2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북·조합영사업의 대표적인 것이다. 동경에 있는 모란봉주식회사와 북한의 은하무역총공사와의 합영인 이 회사의 전연식 사장은 조총련 중앙부의장, 합영사업연구회 회장, 조선국제합영총회사 부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한다는 합영의 본래 목적을 실현한 소수의 성공사례로서, 의류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1990년에는 북한과 조총련 양측이 각각 30만 달러의 이윤을 올림으로써 일본 섬유업계에 화제가 되었다.⁸⁾

이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1985년 11월에 재일조선상공인 50

여명이 출자한 운산광산개발합영회사가 있다. 북한은 운산광산의 금을 채굴·매각하여 대일본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제일 조선인에게도 무역대금 미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북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조총련 기업인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일본의 광석시험기관과 프랑스의 광산개발전문회사의 조사보고에서 경제적으로 흥미가 있는 유망한 비철금속광산이라는 사전조사 결과 후 1987년 4월에 운산합영청년광산의 착공과 더불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관한 소식이 두절되고 있어 이 합영사업이 순탄하지 않음을 짐작할 뿐이다.⁹⁾

외자도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북한은 1988년 11월에 정무원 산하에 합영공업부를 신설하여 종래의 합영지도국을 대신하게 하고, 이제까지 북·조합영사업의 창구역할을 해 온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합영공업부의 일개 부서로 두었다.

합영공업부의 신설에 따른 북한의 설명은 합영부문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독립하므로 조총련 기업인의 투자는 국가의 책임하에 안정성이 더욱 확고히 보장되며 금후에 합영

8) 金道卿·申愍榮,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pp. 51~52.

9) 운산금광(북·조합영사업으로 추진중인 운산광산인지는 확실치 않음) 매각상담을 위해 북한은 1992년 10월 이래 이스라엘과 접촉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Time*, June 7, 1993, pp. 30~31.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보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조총련 기업인은 북한과 함께 외국과도 합영할 수 있게 되어 합영사업을 보다 국제적·다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영공업부도 1990년 5월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1년 반만에 폐지되었다.

비록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설립 이래 2년 동안 북·조합영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친북한의 조총련 기업인조차도 북한에서는 기업운영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불만의 하나로서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는 이사회에 참석한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합영법시행세칙(제28조) 때문에 합영회사에 100% 출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조총련의 100% 투자를 허용하는 조치를 1988년중에 이미 취한 것 같다.

1989년 2월의 평양중앙방송은 북한기업의 참가없이 조총련에 의한 합영회사가 설립되었음을 방송함으로써 합영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북한측의 양보가 실제로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회사는 신진상사, 혜성무역상사 등 몇몇 조총련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총련계 단독출자회사인 신흥합영회사로서 자전거, 오토바이, 전자계산기, 칼라TV, 비디오, 녹음기, 통신장비, 축전지 등의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완전 사유를 조건으로 재미교포 박경윤은 500만~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고려상업은행, 금강산국제개발회사, 금강산국제관광회사 등 3사를 설립하였다.¹⁰⁾

북한과 조총련의 합영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조총련의 파레스주식회사와 북한의 조선락원무역상사와의 사이에 1987년 10월에 세워진 락원금융합영회사와,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 사이에 5대5의 출자로 1989년 4월에 개업한 조선합영은행이 있다. 합영기업을 대상으로 내외결제와 용자를 제공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조총련 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내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합영은행은 사회주의 금융제도와 유리되는 일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가진 금융기관이다. 조선합영은행은 함흥에 지점을 두고 사리원, 신의주, 원산, 평성, 청진에 출장소가 있으며, 외국환에 관련한 업무는 일본의 족리(足利)은행이 대행하고 있다.¹¹⁾

1989년 10월 3일에 있는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 제5차 이사회 확대회의에서 전연식 사장은 합영사업의 발전을 호소하면서 금후에는 북한의 기간산업에 합영투자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70건의 합영계약과 35건의 합의서교환이 실현되었으며 총투자액 120여억엔에 40개의 기업이 조업중

10)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p. 59.

11)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pp. 123~24.

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일성의 2·28교시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평양에서 합영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유망 합영공장의 소개를 현저하게 하고, 북·조합영사업 제품의 일본 진출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합영회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합영회사는 조총련의 국제트레딩과 북한의 용악산무역총회사의 합영기업으로 레아스를 생산하고 있다. 1988년 8월에 합영계약이 교환되고 1989년 7월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91년 8월에 함흥화학합영공장의 조업식을 가졌다. 이 공장의 조업식은 일본 TV에도 소개될 정도로 현대적인 것이며, 금속공업과 전자자동화 공업의 발전과 기술이전효과가 절대적일 것이라며 북한은 이 합영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PACO라는 상표로 다양한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평양피아노합영회사도 우수한 합영회사로 주목받고 있다. 재일조선인 2세들의 유한회사인 PACO와 북한의 평양악기총회사의 합영인 이 회사는 해외수출에 의욕적이며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도 마쳤다.¹²⁾

1991년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의 문수극장에서 열린 조총련합영제품전시회의 개막식에는 북한측의 연형묵 총리

12) 金道卿·申愷榮,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pp. 52~53.

를 비롯하여 박성철 부주석, 윤기복 서기, 김달현 부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와, 조총련에서는 한덕수 의장, 전연식 부의장, 최일수 상공연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총 223종 2,143점의 제품이 선보인 이 전시회에 참가한 조총련 합영기업은 69사였다. 전시회를 방문한 김일성은 합영제품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하면서 합영사업을 발전시켜 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지만 이후 북·조합영사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

나. 성과

북한이 「합영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외자유치의 성과는 합영사업의 유치실적과 규모라는 양적인 면과 더불어 합영의 상대와 부문 등의 질적인 면도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합영사업의 현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제까지 보도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의 합영사업은 양적·질적으로 동시에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질적인 면에서의 부진이란 북한의 합영사업이 상대적으로 서비스부문에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과 서구 선진국과의 합영사업이 불과 몇건에 불과하여 북한이 합영을 추진함에 있어 원래 목적하였던 서구의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른다.

가동중인 합영기업의 숫자에 관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도는 1991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조총련합영제품전시회에 북한과 조총련의 합영기업 69사가 출품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 9월 16일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촉진위원회 서기장 겸 합영공업총국 국장인 김창길은 재미한인연합회의 북한산업시찰단에게 북한 내에는 100여개의 합영회사가 설립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김국장은 신화사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숫자를 밝히고 있다.¹³⁾ 한편 재일조선인 신문에 따르면 1991년 12월 초 현재 북한 내에서 가동중이거나 계약 체결된 합영건수는 140여건으로 이중 재일조선인과의 합영사업은 계약된 것이 106건이며 62건이 조업중에 있다고 한다.¹⁴⁾

국내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합영법 시행 이후 1992년 7월 까지 외국기업과 140여건의 북한내 합영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조업중인 66건 중에는 일본(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소련 및 중국과 각각 4건, 프랑스와 스웨덴과도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또한 계약체결된 북한내 합작기업 140여건 중 조총련 동포가

13) 韓國開發研究院,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1991年版-」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2), p. 112.

14)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p. 105.

15) 「한겨레신문」, 1992. 10. 3.

116건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외신은 1992년 3월 현재 북한 내에는 100여개의 합영회사가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은 조총련과의 합영이라고 전하고 있다.¹⁶⁾

연도별 외국인 투자건수는 1985~1986년 12건, 1987년 22건, 1988년 17건, 1989년 21건이었으나, 1990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며 1991년 17건, 1992년 20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3년에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조총련 기업을 포함한 외국과 합영사업을 계약한 것은 14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설립된 것은 100여개 정도이며 그나마도 가동중에 있는 것은 70여건에 불과한 것 같다.¹⁷⁾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은 계약이 11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조업중인 것은 1991년 4월의 평양 전시회에 출품한 69사에서 1992년 7월에는 56사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1986년에 설립된 청량음료 생

16) Mark Clifford, "Opening up the Cla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6, 1992), p. 60.

17)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 말까지 북한의 합영사업을 통한 외자유치 실적은 140여건에 1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중 투자내용이 파악된 것은 11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체인 창광합영청량음료점의 3개사는 기부외 형식을 빌어 북한 당국에 몰수되었으며, 1989년에 설립되어 TV부속품 등을 생산해 오던 전유합영회사 등의 6개사는 원자재난과 전력사정의 악화로 1991년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분명한 사실은 북한 합영사업의 주축을 이루어 온 북·조합영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였으나 기존의 사업이 조업중단 등으로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1991년 이래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를 위하여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한 바 있으며, 개방의 초기년도인 1988년에 23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이래 해마다 유치실적이 증가하여 1992년까지 모두 470건에 41억 6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¹⁹⁾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의 외자유치 실적을 놓고 볼 때 북한의 합영사업을 통한 외자유치 실적은 건수 및 금액면에서 매우 부진하였다.

북한이 이제까지 추진해 온 외국과의 합영사업을 북·조합영사업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합영사업의 주된 상대국이 일본이라 할지라도 북한과의 합영에 순수 일본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본은 조총련기업의

18) 金道卿·申愍榮,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p. 50.

19) 權栗,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現況과 展望,” 「지역경제」, 제2권 제5호 (1993. 5), p. 73.

합영사업에 부분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조총련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일본에서 주로 제3차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데는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투자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북·조합영사업의 문제는 바로 북한이 합영을 추진함에 있어 원래 목적하였던 서구의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대장성에 신고된 일본(조총련)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직접투자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32건에 금액은 3,132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 1건당 평균투자액은 약 1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8년과 1989년의 두 해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섬유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크고, 기타 제조업, 기계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1992년에 신고된 투자건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접투자액은 385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합영사업은 주로 농수산물의 1차산업, 상점 및 식당의 3차산업, 그리고 의류, 섬유 등의 경공업부문의 2차산업에 치중되어 있다.²⁰⁾ 경제를 활성화하고 당면하고 있는

20) 업종별로는 식료품, 섬유, 의복 등과 같은 경공업 분야가 35%, 백화점, 커피숍, 식당 등의 서비스분야가 30%, 농수산물분야가

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은 석탄, 비철금속 등의 광업 부문과 중화학관련부문 등에의 합작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들 분야에서의 합영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관련부문의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합영사업은 그 내용(외자유치 분야)면에서도 바람직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합영사업에서 생사, 양복 등 섬유, 의류관련 부문의 합영이 최근에 와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북·조합영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합영제품의 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합영제품의 대일본 수출증가로 의류, 섬유류는 대일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이전까지는 금속제품이 수출의 주종을 이룸)을 차지하게 되었다.

북한이 추진해 온 합영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섬유, 의류부문이다. 예를 들면, 모란봉합영회사는 남성용 슈트 및 잠바, 여성용 브라우스 등을 사꾸라그룹을 통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수출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1%, 금속·기계분야가 8%, 광업이 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의 합영사업은 주로 생필품을 비롯한 소비재 산업에 치중되어 왔다.

다. 문제점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북한이 추진해 온 합영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1차적인 원인은 역시 북한의 투자환경이 중국 등과 비교해 볼 때 그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북한은 원자재 및 에너지의 공급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도로, 철도,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의 좁은 시장성과 경제관리체제의 경직성 등도 외국투자가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은 실추된 대외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북한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대외적인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대외신용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는 크게 힘쓰지 않았다.

북한이 서구자본의 유치라는 「합영법」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에만 열중하게 된 것은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다. 서구 선진국 기업과의 합영사업은 북한체제 내에 시장경제가 유입됨을 의미하나, 조총련 기업을 합영의 상대로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심리적인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도 덜 비판적이고 비밀을 담보할 수 있다. 북한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합영기업은 조총련 동포들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합영기업소가 시장경제제도의 침투경로

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보도는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뒷받침하고 있다.²¹⁾

북한에서 성공한 사례로 여겨지는 모란봉합영회사의 성공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이 기업이 북한의 관료조직 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모란봉합영회사의 사장인 전연식은 조총련의 부의장일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북한의 관료조직에서 발언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란봉합영회사는 북한 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동자들도 거의 북송교포를 고용하는 등 일본식의 경영이 가능했다. 또 다른 성공 사례인 평양피아노합영회사의 경우도 일본내 수입판매원의 사장이 모란봉주식회사의 핵심 임원으로 모란봉합영회사와 깊은 관계에 있다.²²⁾

북·조합영사업이 초기에는 북한(조국)에 대한 조총련 동포의 애국심과 충성을 자극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조총련 기업이 북한 내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내에 있는 가족, 친지들의 지위 향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합영사업이라기

21) 内外通信社, “실적 부진한 北韓의 對外合作 사업,” 「内外通信」, 綜合版(46), p. 229.

22) 삼성경제연구소,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2), pp. 96~97.

보다는 현금이라고 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조총련 기업인마저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 같으며, 더 이상의 투자보다는 북한내 가족들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투자에서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총련 동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합영사업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서구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과감한 경제개방정책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데는 투자의 수익성 보장이 불확실하고, 투자여건이 나쁘며, 제반 법규가 미비(외자유치 관련 법규의 정비로 어느 정도 해소됨)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점진적인 내부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 III 장 90년대 제한적 대외개방

1. 배경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에 의해 나진·선봉지역의 621km²를 중국식의 경제특구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의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합영법」 제정을 앞두고 북한의 경제각료와 실무자는 수차례 중국의 경제특구를 시찰하는 등 북한도 「합영법」 제정과 함께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설치하지는 않았다. 경제특구는 북한의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영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어느 장소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특별히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시 북한의 설명이었다.²³⁾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서두르지 않은데는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구소련과의 정치적인 밀월이 큰 작용을 하고 있었다. 1984~1988년 기간 동안 북한과 구소련의 무역은 급신장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수입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구소련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서구 선진국과의 합영 부진에서 오는 자본과 기술도입을 어느 정도 상쇄하여 북한

23) 韓國開發研究院,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1991年版-」, p. 118

으로 하여금 경제특구의 설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관을 받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이 경제특구를 설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특구를 통해 주민이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정경분리방식의 특별행정구역인 경제특구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정책이나 관리체제를 가진다. 즉 경제특구를 설정하여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경제특구 내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경제특구내 주민이 자본주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외자유치의 성과가 부진하고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질서의 대변혁으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을 택한 것은 주민이 자본주의 사상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 선택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 북한체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나진·선봉지대의 설치로 북한이 취할 다음 조치는 1980년

대 중반에 제정된 외자유치 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내재적 모순과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계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설치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은 1992년 10월 이후 외자유치 관련법들을 연달아 제정·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기존의 외자유치 관련법에서 미비했던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에 대한 불안에서 야기되는 대북투자 회피현상을 해소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자유치 관련법의 정비는 나진·선봉지대의 설치와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경제개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북한의 정책전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외경제개방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개방의 바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경제회생을 위해 개방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고 있다. 즉 개방확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내부개혁은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가. 추진 현황

1991년 말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이래 북한은 지대창설과 개발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국제적인 관심이 쏠린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며, 나진·선봉지대 개발구상을 일본을 포함한 서방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1992년 5월 동북아경제포럼을 평양으로 유치하였다. 또한 1992년 후반부터 나진시를 중심으로 이 지대의 개발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2년 11월 일본에서 두만강지역개발 관련 국제심포지움을 가진 이래 북한은 해외에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²⁴⁾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서구에서 열린 이들 투자설명회에서 나진·선봉지대의 창설과 개발 및 참가 유망분야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한편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창설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고 외자유치 관련법을 잇달아 제정·발표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

24) 「中央日報」, 1993. 6. 19.

하기 위하여 1993년 1월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도 포함되어 있다.

1993년 3월에는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을 완성하고 정부의 비준을 받았으며, 중국에 인접한 원정리 일대 125km²를 추가로 이 지대에 편입하여 나진·선봉지대를 총 746km²로 확대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초 평양 PMC(두만강개발계획 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합의된 교통·운수 및 통신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건설을 우선 착공하게 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착공에 필요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항만, 도로를 비롯한 일부 시설물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3년 6월 중국과 청진동향 및 청진~회령 도로 확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두만강 하류지역의 철도 및 향후 공동건설에 대한 협정도 체결하였다.²⁵⁾ 청진동향의 확장 및 50년간의 사용권을 중국에 넘기기로 한 이 계약은 연길에 있는 선호기업집단의 리철호 총재가 중국을 대표해 사인하고, 나진·선봉지대 개발의 전담기구로 조직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리경일 부위원장이 북한측을 대표해 사인했다. 북한은 중국측과의 계약에 따라 현재 나진·선봉지대의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25) 「週刊朝鮮」, 1994. 3. 24. pp. 10~11.

북한이 합영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은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들이 정비되고 서구 선진국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이 조총련 기업인과의 합영에서 탈피하여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합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총련 기업인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진·선봉지대 내에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제에 덜 위협적인 해외동포 및 서구 선진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1993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두만강개발관련 자원·산업분야 제2차 워크숍」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은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투자대상안내」라는 책자를 통해 이 지대의 사회간접자본과 공업부문에서 외국과 합영, 합작 가능한 외자유치 희망프로젝트를 밝히고 있다. 이 안내책자가 한글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북한이 남한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진·선봉계획은 UNDP(유엔개발기구)의 두만강개발계획과 추진의 시기를 같이하고 있어 북한이 계획 추진을 연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개발계획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나진·선봉지역이 두만강계획의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

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나진·선봉지대는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지대 내에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기업이 진출했다고 보도된 적은 없다.

나. 주요 내용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이다.²⁶⁾ 제1단계(1993~1995)에서는 이 지대를 국제화물 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에서는 중계기지의 역할 강화와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제조업을 유치하고, 제3단계(2001~2010)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한은 항만부문에서 현재 연간 1,200여만톤 규모의 항만능력(나진항 300만톤/년, 선봉항 200~300만톤/년, 청진서항 700만톤/년, 청진동항 100

26)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은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lden Triangle: Rajin-Sonbong* (19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참조.

만톤/년)을 1단계에서 연간 3,000만톤(나진항 1,500만톤/년, 선봉항 400만톤/년, 청진서항 1,000만톤/년으로 확장), 2단계에서 연간 5,000만톤(나진항 3,500만톤/년, 선봉항 1,000만톤/년으로 확장), 그리고 3단계에서 1억톤(나진항 7,500만톤/년, 청진동항 1,000만톤/년으로 확장)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들을 기능전문화한다는 목표 아래 나진항을 1단계에서 연간 15~20만TEU, 2단계에서 120만TEU, 3단계에서 360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국제컨테이너전문항으로, 선봉항을 원유전문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철도부문에서는 1단계에서 회령~학송(168km)간 철도 전기화, 조산리~구룡평(13km)간 광궤 신설, 두만강역~햇산(590m)간 복선철교 신설, 삼봉~개산툰(4km)간 철도 건설, 나진~구룡평간 역구내 확장(나진역 포함 6개역), 두만강역구내 자동화, 청진~두만강(129km)간 철도통신 현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2단계에서 회령~학송간 철도 보강과 나진~구룡평(33km)간 광궤 신설, 3단계에서 나진~훈음간 철도와 북부지구 순환망 철도 일부구간 복선화, 나진~회령 철도 직선화가 이루어진다. 기관차대 및 객화차대의 건설과 확장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추진될 계획이다.

도로부문에서는 1단계에서 청진~회령(80km), 청진~나진(92km), 나진~새별(112km), 선봉(홍의)~두만강(9km)간 기

존도로를 개조 및 확장하고, 2단계에서 청진~회령(82km), 나진~새별(73km), 나진(하회)~두만강(45km), 은덕(하여평)~월정(7km)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3단계에서 청진~나진(67km), 새별~남양(도문)(43km)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새별~남양~회령(127km)간 북부지구 순환도로의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통신부문에서는 1단계에서 나진시의 중심에 교환능력 4만 회선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설하고, 이 지역의 국제통신을 위해 현재 평양~나진~블라디보스톡간 통신망 용량의 대형화와 나진~훈춘간 근거리통신중계망을 정비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 교환능력 14만 7,800회선 규모의 위성통신지구국(나진)과 통신분국(선봉, 응상, 후창 등)을 설치하여 ISDN체제의 확립과 국제통신위성지구국의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과 CATV의 실현을 구상하고 있다. 3단계에서 자동통신분국의 건설과 나진~훈춘, 나진~포시에트간 광섬유케이블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선봉군 부포리와 굴포리 일대에 국제공항을 신설하여 1단계에서 연간 여객 800만명과 화물 100만톤을 취급하고, 2단계에서 연간 여객 2,000만명과 화물 250만톤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나진·선봉지대의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의 하천을 활용함과 동시에 수자원을 1단계에서 1,200만 m^3 , 2단계에서 9,300만

m³, 3단계에서 1억 6,000만m³를 신규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1단계에서 무창저수지를, 2단계에서 녹야저수지, 3단계에서 금송저수지와 낙송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용수와 마찬가지로 전력도 우선은 기존시설에서 공급될 것이지만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현재 20만kw의 선봉화력발전소를 1단계에서 40만kw로 확장하고, 2단계에서 선봉화력발전소의 확장과 함께 나진시에 30만kw의 나진화력발전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어비스 및 관광부문에서는 1단계에서 안주(대초도)~신해(피파도)와 우암~굴포(번포)를 종합레저시설을 갖춘 관광휴양지로 개발·조성하고, 200실 규모의 나진호텔과 행정, 무역, 금융, 통신, 상업, 회의 등 업무활동 및 서어비스 종합센터인 나진·선봉지대 개발촉진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관광지를 확대하고, 나진과 선봉에 국제호텔을 건립하는 동시에 무역센터 건설도 구상하고 있다. 3단계에서 웅상과 두만강에 국제호텔의 건설과 각 부문별 센터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9개의 공업지구(공단)로 나누어 단계별 개발계획과 지구별 유치대상 업종을 밝히고 있다. 1단계에서 나진의 신흥지구(20정보; 종합적인 경공업), 동명지구(20정보; 신발, 편직, 일용), 창평지구(60정보; 배수리, 기계), 청계지구(20정보; 피복), 그리고 선봉의 백학지구(20

정보; 전자, 자동화) 등 5개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2단계

〈표 3-1〉 나진·선봉지대 외자유치 대상건수 및 유치규모

(단위: 만 달러)

	사업수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합계
사회간접자본	23	128,987	102,088	101,570	332,645
항만	3	37,560	40,550	87,600	165,710
철도	6	15,812			15,812
도로	6		20,680	13,970	34,650
공항	1	46,765	26,092		72,856
통신	2	4,090	14,766		18,856
전력	1	16,000			16,000
관광	4	8,760			8,760
공업부문	68	284,495	11,140	70,620	366,255
신홍	15	20,095			20,095
동명	3	850			850
창평	3	2,550			2,550
청계	4	5,140			5,140
백학	18	94,350			94,350
응상	4		6,590		6,590
관곡	2		4,550		4,550
후창	8			22,620	22,620
홍의	2			48,000	48,000
기타	9	161,510			161,510
총합계	91	413,482	113,228	172,190	698,900

주: 공업부문 외자유치 희망프로젝트의 단계별 투자금액은 공업지구의 건설시기를 기준하였으며 기타지구는 1단계에 포함시킴.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에서 신흥, 백학지구의 확장과 더불어 선봉의 웅상지구(250정보; 목재가공, 보세창고)와 나진의 관곡지구(370정보; 화학, 건재)를 추가로 개발하며, 3단계에서 관곡, 웅상지구의 확장과 나진의 후창지구(200정보, 식료, 방직) 및 선봉의 홍의지구(180정보; 금속, 기계)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후방부문 사업으로 2단계에서 채소온실, 축산(목장)기지, 수산기지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에서 태양열채소온실 건설, 축산기지 확장신설, 원양수산기지 건설 등도 계획하고 있다.

나진·선봉지대와 청진항 개발을 위해 북한은 총투자규모 69억 8,900만 달러의 사업에서 합영, 합작, 외국인 단독투자를 통한 외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²⁷⁾ 이중 사회간접자본(관광부문 8,760만 달러 포함) 건설에 약 33억 3,000만 달러, 공업부문의 사업에 36억 6,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1단계에서 41억 3,000만 달러, 2단계에서 11억 3,000만 달러, 3단계에서 17억 2,000만 달러를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나진·선봉지대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위의 금액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7) 나진·선봉지대의 외자유치 희망프로젝트에 대한 총투자규모, 부문별·단계별 투자규모, 공업지구별 외자유치 사업건수 및 투자규모, 업종별 예상평균 투자규모 등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를 참조.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나진·선봉지대의 총자금 소요액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다. 문제점 및 평가

나진·선봉지대는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 등 기존의 항만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되는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큰 투자없이 동북아지역의 물동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및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요충지로서의 지리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어 UNDP가 주관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인접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개발계획의 성공여부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지대 개발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공업부문 유치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나진·선봉지대는 북한경제와 단절된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 내의 노동가능인구는 7만 6천명 정도에 불과하다.²⁸⁾ 따라서 이 지대를 공업지

28)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Golden Triangle: Rajin-Sonbong*, p. 30; 나진·선봉 지역은 약 13만명, 청진은 약 7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노동자를 유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 및 주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노동력의 확보가 나진·선봉지대를 수출가공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 유치의 전제조건이라면, 북한이 이 지대를 경공업과 중공업이 복합된 수출가공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은 제고되어야 한다. 중공업부문이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북한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자도입 또한 이 부문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나진·선봉지대 내에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공업부문 프로젝트의 업종별 예상투자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업종별 예상평균투자규모는 중공업부문의 석유·화학분야에서 약 5억 달러, 경공업부문이라 할 수 있는 전기·전자분야에서 약 5,000만 달러, 섬유·의류분야에서 약 1,000만 달러, 목재·가구분야에서 약 2,000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²⁹⁾ 따라서 경공업부문에서의 투자규모를 축소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한 개발계획도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공항을 1단계부터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 이

29) 金益洙 編,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대한 分野別 評價」(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p. 120.

지대의 인구와 물동량으로 보아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타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위한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1단계에 많이 포함된 것도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건설은 해외경제 및 주변국의 물동량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3. 외자유치 관련법 정비

가. 정비 현황과 법적 체계

1992년 10월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된 시기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10월 5일에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고, 같은 달 16일에는 「합영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이어 1993년 1월 31일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10월 27일에는 「토지임대법」을, 11월 17일에는 「세관법」을, 11월 24일에는 「외국투자은행법」을, 11월 29일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을, 12월 30일에는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을 각각 제정하였다.

북한은 1994년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외자유치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1월 20일에는 기존의 「합영법」을 개정하였고, 2월 21일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3월 27일과 4월 28일에는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 규정」을 각각 제정·발표하였다. 6월 14일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을, 6월 27일에는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을 9월 7일에는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북한이 제정·발표한 외자유치 관련법 중에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합작, 합영, 외국인기업의 창설·운영 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합작법」, 개정된 「합영법」,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은행법」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자유치 관련법은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령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령으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일반법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기존의 「합영

〈표 3-2〉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

연 도	월 일	외자유치 관련법
1984	9. 8	합영법
1985	3. 7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3. 20	합영법시행세칙
	5. 17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세칙
1992	10. 5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10. 16	합영법시행세칙(개정)
1993	1. 3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0. 27	토지임대법
	11. 17	세관법
	11. 24	외국투자은행법
	11. 29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2. 30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994	1. 20	합영법(개정)
	2. 21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3. 27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4. 28	자유무역항규정
	6. 14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6. 27	외화관리법시행규정
9. 7	토지임대법시행규정	

회사소득세법」 및 동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법세칙은 북한측의 존폐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에도 자유경제무역지

대 내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화거래, 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유가증권·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절차를 규제하는 「외화관리법」, 외국투자가와 외국기업의 토지 임대 및 이용에 관련한 「토지임대법」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령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의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 규정한 노동인력 관리 운영에 대한 시행세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 제정한 외자유치 관련법 시행령에는 「합영법시행세칙」,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 및 거주규정」,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등이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은 상당 부분 중국의 관련법을 참고하거나 원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임대법」은 중국의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재양도 잠정조례」를,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과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실시규칙」을 참고하였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소득세법」은 중국의 관련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는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에 적용할 각종 세제를 하나로 묶어는 것이 특징이다.

나. 의의 및 특징

「합영법」 발표 이후 10년만에 북한의 외자유치와 관련한 법적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외자유치 관련법규의 제정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경제개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북한의 정책전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외자유치 관련법에서 미비했던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대북투자 회피현상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를 장려한다는 원칙(외국인투자법 제1조)을 채택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제정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여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외국투자가들에게 적용될 세제상의 법규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중국을 상당히 의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독자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외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세제상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토지임대법을

제정함에 있어 생산수단 국유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판매, 재임대, 증여 등을 허용한 것은 경제개방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자유치 관련법 곳곳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개방의 참모습과 부딪치게 된다. 경제개방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을 제정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증없이 초청장 만으로 입국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비록 자유경제무역지대일지라도 외화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외국인 및 차량의 출입을 허가하려는 것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인 것 같다.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법에는 외국인의 대북투자유치를 위한 특혜 조항은 거의 없으며,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내 근로자 임금을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 외국투자를 집중 유치하려는 의도로서 개방에 따른 체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개방의 바람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국한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합영에 국한되어 있던 외국인이 북한 내에 투자하여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

국인기업의 3가지 형태(외국인투자법 제2조)로 확대하였다.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나 운영은 북한측에서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양측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고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며, 외국인기업은 투자와 경영이 전적으로 외국투자자가에 있는 기업이다.

외국투자가는 북한 내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외국투자은행법 제2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투자은행의 종류에는 합영은행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 가능한 외국은행 및 외국은행지점이 있다. 이러한 외국투자은행에게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활동의 독자성이 인정(외국투자은행법 제3조)되고 있다.

외자유치 관련법 정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북한은 비록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이지만 100% 외국인의 투자에 의한 외국인기업을 허용(외국인투자법 제2조 및 제3조)하고 외국인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수출입물자에 대한 무관세: 외국인투자법 제9조 1항, 소득세 감면 및 낮은 소득세율 적용: 동법 제9조 2항)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외국인투자법 제10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

정 제6조)하고, 외국인기업에게 최고 50년까지 토지임대를 허용(외국인투자법 제15조, 토지임대법 제6조)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26조)되어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와 관련한 투자재산의 국유화가 금지(외국인투자법 제19조)되었으며, 이윤의 국외 송금이 허용(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 외국인기업법 제22조, 개정된 합영법 제42조)되고, 경영상의 비밀이 보장(외국인투자법 제21조)되었다.

외자유치 관련법 적용의 범위를 종래의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1984년 합영법 제5조)에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외국인투자법 제5조, 합작법 제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7조, 개정된 합영법 제2조, 외화관리법 제10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6조, 토지임대법 제2조, 외국투자은행법 제7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2조, 외국투자은행법 제7조)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남한의 기업과 개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인소득세, 장려부문(자유경제무역지대내 생산부문 포함)에서의 소득세 감면, 재투자시의 소득세 환급 등 외국인투자

에 대해 북한은 중국에 비해 대체로 세제상 우대조치(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2조, 제15조 2항, 제16조)하고 있는 것도 이번 법제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투자여건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개정된 합영법 제7조)을 두어 우선적으로 해외동포들의 대북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와 외국기업에 대해 토지이용권의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 및 저당을 허용(토지임대법 제15조)하므로써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원칙에서 벗어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토지이용권을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문제점

한편 이번의 법제정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서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에 있어서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는 조항(합작법 제13조)을 들 수 있다. 북한 근로자의 우선 사용을 요구하는 종업원 채용의 배타성(외국인투자법 제16조, 외국인기업법 제20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1조, 개정된 합영법 제26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기업 및 합영기업이 보험을 들 경우 반드시 북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23조, 개정된 합영법 제31조)은 외국인기업 및 합영기업에게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수입에 대한 사전 승인(합작법 제12조)으로 합작기업의 물자조달이 보장되지 않고,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나친 간섭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요구(외국인기업법 제15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분쟁발생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에 의존해야 하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31조, 합작법 제26조,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48조, 외국투자은행법 제32조)과 (등록)자본을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26조, 개정된 합영법 제15조)은 기존 합영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임대 및 이용과 관련하여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의 양도 또는 저당시 임대한 기관의 승인(토지임대법 제15조)을 받아야 하고,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북한 당국이 우선 구매권(제19조)을 가지며, 40년 이상 임차하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 해당토지에 설치한 건물과 부속물에 대한 보상없는 반환(제34조) 등은 토지임차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오려는 외국인인 사증대신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초청장으로 가능(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제6조)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용여하에 따라 사실상의 사증심사제도로써 외국인의 입출국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노동임금과 관련하여 노임을 북한 원화로만 표시(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26조)하고 있어 환율 적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상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외국인기업법 제29조)은 주체가 모호하며 법의 적용이나 해석에 북한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은 조항이다. 법규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시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모든 조건들을 명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외국인기업법 제3조) 및 “인민경제발전에 해를 주는 행위”(외국인기업법 제5조) 등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한편 외자유치 관련법 여러 곳에서 개방에 따른 체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방의 바람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내로 국한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한 것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를 우대하는 것은 이 지대에 대한 외자유치를 우선시한다는 의미 외에 개방의 바람을 이 지대에 국한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비록 이번의 법제정을 통해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규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법규외에도 섭외(涉外)경제계약법, 특허법, 상표법, 외국인투자 장려규정, 기타 조세에 관한 규정 등의 국가차원의 법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외에도 지방정부차원의 특별법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북한도 이와 같은 필요한 법령의 추가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제 IV 장 대외무역동향과 남북경협

1. 대외무역동향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에 따른 시장상실 및 결제방식의 변경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8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52.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3년에는 26.4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진행된 대외무역의 급격한 감소는 다소 진정되어 1991년 이래 매년 27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과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던 구소련과의 교역량이 계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량도 계속 감소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이들 국가들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1993년도 북한의 총교역상대국은 54개국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중국, 일본,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과의 교역이 전체교역의 68.8%를 차지하고 있어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일 뿐 북한의 대외교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에 편중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전체교역에서 3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1991년 이후 북한의 제1교역상대국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본(19.1%), CIS(13.4%), 독일(4.8%), 홍콩(4.4%), 인도(3.1%) 등이 있다.

〈표 4-1〉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1987~1993)

(단위: 억 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무역액	41.4	52.4	48.0	47.2	27.2	26.6	26.4
수출	16.4	20.3	19.1	19.6	10.1	10.3	10.2
수입	25.0	32.1	28.9	27.6	17.1	16.3	16.2

자료: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연평균 무역의존도는 18.2%로서 계획기간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뚜렷한 무역의존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 20%를 상회하던 무역의존도는 1990년부터 10%대로 낮아졌다. 이것은 종래의 무역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대외무역을 급격히 위축했기 때문이다.

북·중무역은 1991년 이래 중국의 거둬들인 경화결제방식으로서의 전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상무역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화결제능력 부족을 중국이 용인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실제로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1989년까지

5억 달러 내외를 유지해 오던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액이 199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3년의 교역규모는 9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 곡물, 코크스 등의 전략물자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필요로 하는 원유 및 곡물의 최대 수입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등 건축용 자재와 수산물 등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북·중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로는 변경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당국간 협정무역의 보조수단으로 변경무역이 장려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과 북한간의 상호보완적인 상품교류를 통해 양측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북한과 일본의 무역규모는 4.5억 달러에서 5.6억 달러의 범위 내에서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 1991년 이래 북한의 제2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북한이 동구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의 붕괴로 해외시장 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북한의 경제교류 및 무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기계·장비, 섬유, 화학제품 등의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에 대한 수출품목

으로는 식품류, 섬유, 금속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합영기업 또는 임가공형태로 제조·수출하는 섬유(봉제의류)는 1993년 9,303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 매년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일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는 섬유제품의 임가공무역이 북·일무역을 주도하고, 북한의 일본에 대한 수출품목구조도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러시아(구소련)는 1990년까지 북한 대외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유, 코크스 등 전략물자의 주된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1991년부터 북한과 러시아간 결제방식이 국제시장가격에 기준한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북·러무역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0년 북·러무역액은 25.7억 달러였으나 1993년에는 불과 3.5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1993년도 북한 대외무역의 총체적인 특징으로는 수입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수출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부문에서는 특히 위탁가공무역이 활기를 띠어 각 기관과 기업소에서 소요되는 외화를 자체조달한다는 외화벌이 정책이 어느 정도 주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광산물, 비금속류 등 1차 원자재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섬유류 위탁가공제품교역이 급성장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최대교역품목으로 부상할 가능

성이 크다. 1993년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 중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철강 및 철강제품, 아연피 등의 비금속제품으로서 총수출에서 31.3%를 점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부분 임가공제품인 섬유제품이 21.4%, 광물, 수산물이 각각 8.3%, 7.5%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위탁가공의 대상이 전자·전기분야, 다이아몬드 가공 등의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고, 위탁가공 교역상대국도 다변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다른 특징으로는 되거리무역(중계무역, 재수출)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93년도에 수출이 급증한 품목인 자동차 등 수송기기의 경우 일본 등으로부터 1억 3,987만 달러 상당을 수입하여 주로 러시아, 중국 등에 7,0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였다. 수출입 차액의 일부는 변경무역을 통해 밀수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위탁가공 및 변경무역, 원유, 식량 등 전략물자의 수입이 주도할 것이며, 위탁가공이 활기를 띠어 수출입의 양적인 팽창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북·미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이 개선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무역제일주의 및 경공업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수출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대외교역 조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다.

2. 남북교역의 현황과 특징

가. 전개과정

남북한 물자교역은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1988년 7월 「특별선언」과 이의 후속조치로서 10월 제정된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의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남북교역을 위한 제도적인 기본틀이 마련되어 남북물자교역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과 북한 주민접촉도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등 정치·안보적인 문제와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남북간 협력사업은 실제로 착수되지 못하고 남북경협은 물자교역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공동개발 등 경협사업을 발표하였으며, 7월 코오롱상사는 북한의 대성은행과 처음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1991년 7월에는 남한쌀 5천톤을 직교역으로 북한에 반출하기도 하였다.

1992년 1월에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방북하여 남포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10월 남포조사단이 방북하였다. 고합그룹의 장치혁 회장도 섬유공장 건설 협의차 9월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에 앞서 7월에는 북한 부총리 김달현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여 남한산업을 시찰하였다.

1994년 3월 한국특수선은 중국연변항운공사와 공동으로 부산~청진간 직항로를 취항하고, 4월 삼선해운이 부산~청진 정기직항로를 취항하였다. 그러나 6월 2일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시 북한과의 임가공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투자계획은 전면 유보되었다.

한편 제네바 북·미회담 타결에 따라 정부는 1994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24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남한기업의 북한방문 신청이 쇄도하는 등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 남북교역 현황

1. 교역규모: 1988년의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1993년까지의 교역 통관총액은 5억 347.5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남북물자교역은 통관기준으로 1989년 1,872.4만 달러, 1990년

1,346.5만 달러, 1991년 1억 1,126.9만 달러, 1992년 1억 7,336.2만 달러, 1993년 1억 8,659.1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3년의 경우 반입은 1992년 대비 9.4% 증가, 반출은 20.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4.5% 증가하였다.

〈표 4-2〉 연도별 반출입 통관현황 (1989~1994. 10)

(단위: 천 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9	66	18,655	1	69	67	18,724
1990	78	12,278	4	1,187	82	13,465
1991	300	105,722	23	5,547	323	111,269
1992	510	162,863	63	10,563	573	173,426
1993	601	178,166	97	8,425	698	186,591
소계	1,555	477,684	188	25,791	1,743	503,475
1994	592	152,022	182	13,493	774	165,515
1~10	(504)	(160,152)	(57)	(5,262)	(561)	(165,414)
총계	2,147	629,706	370	39,284	2,517	668,990

주: () 안은 1993년 동기 실적.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41호.

1993년까지의 누계로 교역규모에서 반입은 94.9%, 반출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통관기준으로 반출입수지는 계속 우리측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은 현재까지 남한이 북한물품 사주기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관실적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연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품목구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통관(누계)된 반입품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이 전체반입의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임산물이 6.3%, 광산물이 5.3%, 석유류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편차는 있으나 주요 반입품목은 철강·금속에 분류되어 있는 금괴, 아연괴, 은괴, 빌레트, 열연코일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1993년의 경우 반입통관 품목수는 77개로 1992년의 81개보다 4개 품목이 줄었으며, 통관품목구조는 철강·금속이 86.6%, 농·임산물이 5.4%, 석유류가 5.0%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류의 반입비중이 1992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위탁가공 교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입 통관총액에서 금괴가 44.1%, 아연괴가 29.6%, 빌레트 7.1%, 은괴 4.5%를 차지하여 이들 4개 품목이 반입 통관총액의 85.3%를 차지하였다. 반입 통관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반입 가능한 상품은 채취 또는 단순 1차가공상품(금속제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 4-3〉 연도별 반입통관 품목구조

(단위: 천 달러)

연도	농·임 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 금속	섬유류	화학 제품	기타	계
1989	414 (2.2)	174 (0.9)	1,094 (5.9)	15,073 (80.8)	1,311 (7.0)		589 (3.2)	18,655
1990	4,931 (40.1)	392 (3.2)	1,599 (13.0)	4,529 (36.9)	204 (1.7)		623 (5.1)	12,278
1991	4,600 (4.3)	3,053 (2.9)	6,619 (6.3)	86,046 (81.4)	1,588 (1.5)	1,672 (1.6)	2,144 (2.0)	105,722
1992	10,435 (6.4)	5,085 (3.1)	14,579 (8.9)	125,416 (77.0)	3,638 (2.3)	1,248 (0.8)	2,417 (1.5)	162,863
1993	9,674 (5.4)	878 (0.5)	1,371 (0.8)	154,263 (86.6)	8,945 (5.0)	663 (0.4)	2,372 (1.3)	178,166
계	30,054 (6.3)	9,582 (2.0)	25,262 (5.3)	385,327 (80.7)	15,731 (3.3)	3,583 (0.7)	8,145 (1.7)	477,684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2호.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통관(누계)된 반출품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이 전체반출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임산물 26.6%, 철강재 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입품목구조와는 달리 반출품목구조는 연도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89년의 경우 섬유류의 반출이 전부였으나, 1990년에는 기계류가 92.2%를 차지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는 화학제품이 반출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3년에는 섬유류의 반출이 74.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반출품목구조의 연도별 편차는 반출의 절대금액이 지나치게 작기

〈표 4-4〉 연도별 반출통관 품목구조

(단위: 천 달러)

연도	농수 산물	섬유류	전기 전자	기계류	화학 제품	철강재	기타	계
1989		69 (100.0)						69
1990				1,094 (92.2)	83 (7.0)		10 (0.8)	1,187
1991	1,607 (29.0)	25 (0.5)	447 (8.1)		3,468 (62.5)			5,547
1992	64 (0.6)	496 (4.7)		22 (0.2)	7,932 (75.1)	1,957 (18.5)	92 (0.9)	10,563
1993	6 (0.1)	6,274 (74.5)	463 (5.5)		1,096 (13.0)	34 (0.5)	552 (6.6)	8,425
계	1,677 (6.5)	6,864 (26.6)	910 (3.5)	1,116 (4.3)	12,579 (48.8)	1,991 (7.7)	654 (2.6)	25,791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2호.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1993년의 경우 반출통관 품목수도 1992년에 비해 3개 줄어든 21개 품목이었으며, 품목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섬유류의 반출비중이 위탁가공교역에 힘입어 1992년의 4.7%에서 1993년에는 74.5%로 급증한 반면, 1992년의 주요 반출품목인 화학제품은 75.1%에서 13.0%로, 철강재가 18.5%에서 0.5%로 대폭 감소하였다. 테트론솜(37.8%), 면직물 및 직물류(17.6%), 재봉사를 포함한 의류부속품(16.5%) 등의 3개 품목만이 100만 달러 이상을 반출하였다.

3. 기타: 남북한 물자교역승인은 통일원을 거쳐야 하는 제한승인과 은행을 통한 자동승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1990년 이후 자동승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입의 경우 자동승인이 1990년 62.2%, 1991년 69.1%, 1992년 88.3%, 1993년 94.8%이며, 반출의 경우 자동승인이 1991년 39.8%, 1992년 88.0%, 1993년 83.2%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교역에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993년 현재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132개로서 1992년에 비해 9개업체가 증가하였다. 1988년 이후 1993년까지 반입승인액 누계 5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는 럭키금성상사, 삼성물산, (주)대우, 서린금속, 효성물산, (주)선경, 현대종합상사, 한국제강, (주)쌍용, 골든벨상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코오롱상사, 우경월드코퍼레이션 등이 있으며, 반출승인액 누계가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로는 럭키금성상사, 삼성물산, 한중경제교역, 코오롱상사, (주)선경, 현대종합상사, 천지무역, (주)대우, 두성통상 등이 있다.

남북한 물자교역은 대부분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교역방식에는 해외중개상을 통한 순수한 간접교역과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측과 직접 협의하되 계약 및 대금결제는 해외중개상을 통하는 간접교역방식도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직교역은 1992년 1.5%, 1993년 1.7%에 불과하였다.

한편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 남북교역의 중개지역 역할을 담당해 왔다. 반입의 경우 1993년에는 홍콩이 74.5%, 일본이 14.4%, 중국이 5.7%를 담당하였으며, 반출의 경우 홍콩이 77.3%, 일본이 9.8%,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4% 정도를 중개하였다.

다. 남북교역의 특징

1. 간접교역 위주: 남북한 물자교역은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접교역방식은 직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부대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북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북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간접교역방식에서 직교역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거래성사율 증가: 남북교역의 승인대비 통관비율은 1989~1993년까지의 누계로 77.1%(반입 79.8%, 반출 47.7%)에 이르고 있으며, 반입이 반출에 비해 거래성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0년 이래 승인대비 통관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성사율은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반입의 경우 1990년

〈표 4-5〉 승인대비 통관비율

(단위: %)

	1989	1990	1991	1992	1993	누계
반입	83.9	60.3	63.7	81.2	94.5	79.8
반출	100.0	25.1	21.2	81.9	82.1	47.7
계	83.9	53.7	57.9	81.2	93.9	77.1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2호.

60.3%에서 1993년 94.5%로 거래성사율이 증가해 왔으며, 반출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25.1%에서 82.1%로 거래성사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 등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 대북한 반입위주: 남북교역은 한국의 북한물품 사주기 형태의 대북한 반입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통관기준으로 볼 때 반입비중이 전체 남북교역의 95%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외화부족, 구매력부족)과 북한 당국이 남한제품의 북한내 유통을 꺼려하고 있기 때

〈표 4-6〉 연도별 반입비중(통관기준)

(단위: %)

	1989	1990	1991	1992	1993	누계
반입비중	99.6	91.2	95.0	93.9	95.5	94.9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2호.

문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역의 확대를 위해서 북한이 남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위탁가공교역 증가: 위탁가공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남북한 물자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할 원부자재를 거래상대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료를 지불하고 다시 제품형태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는 가공임금을 조건으로 수출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임가공무역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반입이 1991년 1건(22,880달러), 1992년 10건(556,076달러), 1993년 44건(4,384,634달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0.26%에서 1993년 2.2%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4년 1

〈표 4-7〉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

(단위: 천 달러)

연 도	건 수	반 입	반 출
1991	1	22,880	13,406
1992	10	556,076	413,635
1993	44	4,384,634	3,610,788
1994 (1~11)	90 (33)	14,855,998 (3,512,727)	10,505,086 (2,822,889)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1호.

월부터 11월까지의 위탁가공교역은 반입승인기준으로 1,486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3배 증가하였다.

북한은 수출상품과 공급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유희설비와 북한의 저임노동을 활용하는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남북경협외 과제

가. 현안과제

남북경협외 과제는 크게 물자교역의 확대와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자교역의 확대와 경협사업의 실시는 북한의 경제사정과 경협에 따른 북한 당국의 체제유지 불안 등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상호 보완과 호혜의 바탕에서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물자교역의 확대와 경협 실시를 위한 현안과제로는 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발표한 남북경제인 상호

방문, 위탁가공의 활성화, 시범적 경협사업 실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남북간 제도합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경제인 상호방문: 경협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협과 관련한 남북경제인의 상호 접촉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협의 초기단계에서 최소한 남한 기업인, 기술자, 실무자 등의 방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북한 당국을 설득하여야 한다. 경제인의 범위에는 남북 경제당국자 및 실무자, 기업인, 기술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당국자는 상호방문을 통해 남북의 경제실상을 파악하고 경협의 방향과 범위를 논의하게 될 것이며, 남한 기업인은 경협시범사업 협의, 실무자는 타당성 조사, 기술자는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생산설비 운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인의 상호 방문과 함께 업무연락, 시장조사, 자료소개 등의 비영업활동과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을 위해 남한 기업의 북한내 사무소 설치도 조만간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남북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

제점으로는 반입면에서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이 1차산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북한의 공급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반출면에서 북한은 경제난 심화로 외화부족과 구매력이 부족하고, 특히 남한상품(생필품 등의 최종소비재)의 북한내 유통을 꺼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쳐볼 때 현단계에서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다.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되는 품목은 원·부자재 및 이를 가공하기 위한 시설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려하는 남한상품의 북한내 유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원·부자재만 북한에 제공하는 단순위탁가공형태는 설비제공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남한의 사양산업(섬유, 봉제,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 생산설비를 북한에 이전하여 북한의 저임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3. 시범적 경험사업 실시: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상태에서 남북경협은 시범적인 사업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시범적 경협사업으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북한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제조업(봉제, 의류, 완구, 양말, 신발, 전자부품 등)분야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식·음료 및 생필품 분야도 고려될 수 있다. 시범적 경협사업의 후보지로는 나진·선봉지대 등 가급적 북한이 개방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북한노동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주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제도합의: 물자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간접교역이 직교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북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직교역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금결제방식 및 직교역 항로(남한의 부산, 인천, 포항과 북한의 남포, 원산, 청진 등을 연결) 개설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청산계정방식의 대금결제원칙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경협현안과제로서 시범적 경협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협정보장 체결, 기업인 등의 방북과 관련한 신변보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협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합의를 도

출하기 위한 남북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나. 대북진출 전략

1. 정부의 역할: 과거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계획이 일시에 유보되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정부는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와 경협을 분리·추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 경제협력 증진계획을 재계, 기업 등과 상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제도 준비를 통한 환경조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대북한 투자를 비롯한 경협과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북한과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사업의 자유화 확대 등 경협 관련 제반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국제규범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대북투자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정부는 경협 활성화 세부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의 간소화를 발표하였음).

한편 규제위주의 규정은 재정비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투자의욕이 고취되도록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및 신변

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법과 상충되는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을 쌍방의 협의하에 조정해 나가야 한다.

현재 대북한 경제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과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부처, 해외공관, 연구소,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구축하여 북한의 투자관련제도, 관행, 산업동향 등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제공해야 한다.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 상호간에 경제협력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대북투자위원회의 설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협력사무소를 통하여 교역 및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상호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북투자위원회를 통해 유기적인 정보공유체제를 갖추으로써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조절할 수 있고 대북협상력이 제고되어 우리측의 입장이 보다 용이하게 관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낮은 대외신용도를 감안할 때 북한이 해외로부터 차관 또는 기타 경험자금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차관도입에 대한 채무보증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직

접적인 차관(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조건) 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현물제공(식량, 의약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한 대북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자금지원과 세제지원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현재의 물자교역 또는 시범적 경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문에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가능성이 높고 효과도 보장되는 운송 및 통신체계의 구축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업의 진출전략: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북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남한기업은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투자장려분야 및 제한·금지분야를 우선 고려하면서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북한의 투자장려분야는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자유경제지대내 투자 등이다. 투자금지 또는 제한분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안

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문을 규정하고 있다.

장려분야에 대해 북한은 외국투자가에게 각종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 사용 조건, 은행대부의 우선 제공과 같은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남한기업은 북한 진출시 우선 섬유·의류부문을 중심으로 농·수산·가공업 등 경공업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에도 응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기·전자, 화학·기계부문 등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정하고 있는 외자유치 방식에는 합영, 합작, 외국인투자의 3가지 방식이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서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방식은 외국과 북한이 공동 투자하되 경영은 북한측이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보다는 완전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이 더 나올 수 있다. 합영방식은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 방식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이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경우 북한측 상대 선정에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단독투자는 100% 외국인 출자와 경영이 보장되지만 북한측 상대자없이 원활한 경영활동이 보장되기

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경영통제, 인사·노무관리 등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조총련 동포와 북한과의 합영사례에서 북한측 상대자의 선정이 성공여부에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난 바 있듯이 대북한 투자시, 특히 합영방식의 경우 상대자 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북한측 상대자로는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거나, 기업간부 및 당간부와 유대관계를 가진 정치적 유력인사 등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장입지는 기본적으로 도로, 용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남한기업이 단독으로 북한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현행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에 따르면 자유경제지대 내에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진·선봉지대로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한편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남포공단 또는 기타지역에 남한 전용공단 건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투자업종, 투자방식, 상대자 및 공장입지 외에도 대북진출을 위해서 기업은 북한과의 합영, 합작시 출자지분과 출자방식(현금 또는 현물비율), 자금 및 원자재 조달, 제품의 판매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망, 자금력, 마케팅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전문기술

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북한에 공동진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진출 방안은 대북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협력업체와 공동진출함으로써 대기업은 안정적인 부품조달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은 제품판매가 안정적일 수 있다. 기업간 공동진출은 기업의 대북진출 과당경쟁 방지뿐만 아니라 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북한이 나진·선봉지대 개발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두만강지역은 동북아지역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등은 천연자원의 공급원인 동시에 잠재적인 시장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직접 진출이 지연될 경우 우선 이 지역에 진출하여 북한에 우회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제 V 장 대외경제개방정책 전망

1. 대외경제관계 증진

가. 대미·대일 경제관계 개선

북·미회담의 타결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추진해 온 합영사업과 나진·선봉지대의 개발계획 등 제한적 대외개방의 성과부진 요인의 하나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 같다. 과거 중국도 대외개방을 시도하기 훨씬 전인 1972년에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 가운데 무역금수와 수출금지 등 일부 조치의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기업인의 방북 및 대북투자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에너지개발 분야, 관광산업 분야 등에 우선적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미 한국기업인들과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논의된 북·미간 연락사무소는 일반적 영

사업무와 함께 양측의 관계개선에 수반될 실무적 문제 및 인적 교류, 경제협력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양측은 연락사무소의 위상 격상과 국교정상화를 목적으로 고위급 정치회담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수교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받게 될 배상금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에 일조를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대북 진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의 경제관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나. 남한기업과의 경험 증진

남북한의 물자교역은 1988년의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10월의 대북경제개방조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교역은 급신장하여 남한은 중국, 일본, 구소련(러시아)에 이어 북한의 4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남한의 대북한 물자반출은 사실상 매우 제한되어 왔다. 1993년 남북한의 교역총액 1억 8,659만 달러중 남한의 반입은 1억 7,817만 달러

인 반면, 남한으로부터의 반출은 843만 달러에 머물렀다.³⁰⁾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남한으로부터의 상품반입이 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경제적인 종속을 북한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분간 남한의 최종제품(완제품)이 북한에서 유통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중간제품의 북한으로의 반출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부족한 외화보유와 낮은 구매력도 남북한 물자교역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자교역 확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한의 합작투자는 필요한 것이다. 합작투자를 통하여 남한은 반제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북한은 이를 가공하여 남한 및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합작투자,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남북한 합작(합영)사업은 북한이 우려하는 남한상품의 북한내 유통, 북한의 외환사정과 구매력부족 등을 완화시켜 남북한 경제교류를 한 차원 높히게 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증진은 부존자원의 차이, 산업부문별 보완성, 비용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상호

30)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2호(1994.2.1~2.28), p. 42.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증진은 그 자체로서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의 북한내 투자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홍보를 추진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남북경협 증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정부는 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렸다는 전제하에 핵-경협 연계를 풀고, 남북대화를 통해 경협을 물꼬뜨기에 진력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지난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1월 10일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 위선적인 광고”라고 비난하고, 11일 조평통의 담화를 통해 “때늦게 던지는 미소를 받을 사람도 없다”고 밝히면서 남북경협방안을 배격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북한의 대응은 핵협상과정에서 집요하게 남한을 배제해 온 북한의 태도로 보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비록 북한이 정부의 경협활성화 조치를 배격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 기업의 북한내 투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정부의 경협활성화조치 이전에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투자접촉은 북한 당국의 묵인하에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적어도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는 「합영법」 제정 당시와는 변화된 북한의 대남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정부와 기업에 대해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은 대내 정치적 안정과 대남분열을 목적으로 정부간의 경협은 거부하면서도, 남한기업들과의 경협에 수반될 경제적 이득까지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2. 무역제일주의 관철

북한은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대외무역기능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993년 12월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3년의 완충기 동안 3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1994년 김일성의 신년사와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 3대제일주의를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은 변화된 국제환경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구조를 개조하고 대외무역에서도 방향을 전환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투자재원이 부족한 북한에 있어 대외무역의 확대는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89년 북한의 부총리 겸 대외

경제위원장인 김달현은 대외무역의 중요성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³¹⁾ 여기에서 김달현은 “현시기 대외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대외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 대외무역 확대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건설에 필요하나 국내생산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원료, 연료의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하고, 둘째, 발전된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하며, 셋째,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세계 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외무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출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출증대를 위해 가공공업을 발전시키며 완제품과 가공품의 수출비중을 높여 나갈 것과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발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를 통하여 세계각국과의 교역을 증대할 것과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

31)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1989년 2호).

출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해운, 철도 및 항공 운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근거한 북한의 전통적 대외경제정책에 비추어 볼 때 ‘대외시장 개척, 수출품생산기지 강화, 수출품의 품질향상과 생산확대,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증대’를 핵심적 내용³²⁾으로 하는 무역제일주의를 북한이 3대 전략적 방침의 하나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경제에 있어 무역제일주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라는 개방정책의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화획득 및 투자재원 확보라는 의미를 뛰어 넘는 것이다.

무역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이전인 1992년 가을부터 북한은 대외무역기능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와 관련한 기관의 기구를 개편하고 기능을 대폭 조정하였다.³³⁾ 우선 대외경제의 일선업무를 관장하던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폐지하고 정부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가 대외경제 관련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 김달현의 후임으로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대는 오랜 기간 북경에 주둔하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의 성과를 목격하고 북한의 현실에 맞는 대외개방 수용방안을 연구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32) 김일성, “1994년 신년사,” 참조.

33) 金尙謙,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pp. 85~87.

한편 과거 비수교 국가들과의 교역시 대외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던 국제촉진위원회에는 전반적인 대외교역의 촉진, 교류 및 조정의 기능이 부과되었으며, 외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대외협력추진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대외경제위원회의 관할 아래 대외경제의 계획, 수출입 및 대외운수,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대외경제 관계를 분야에 따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외경제 관련부서의 기능조정과 함께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서 국가독점의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대외무역 활동의 부분적 분권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새롭게 정비된 대외무역 방침에 따르면 외국무역 업무를 정부원의 각 위원회, 부(部)와 지방의 행정경제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중앙의 하부기관과 지방의 행정경제위원회도 국가의 계획적 지도 아래 독자적인 대외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도입하였다.

비록 신무역체제의 도입이 절대적인 무역자유화와 지방분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아래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종적 다원화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기구 개편과 함께 신무역체제의 도입은 북한이 대외교역 확대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3.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가. 추가지정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각종 산업을 이 지대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동북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으며, 이 계획의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훈춘지역과 핫산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환동해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나진·선봉지대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만강개발계획의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 및 확장을 위주로 한 전형적인 국토종합계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두만강 접경 3국은 모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외자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들 국가와 외자유치 경쟁에 놓여 있다.

결국 나진·선봉지대는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으로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당면한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회생을 시도한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보다 중·단기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새로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신의주, 남포, 개성(또는 휴전선 인접지역), 금강산지역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남포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무역부는 대우그룹과 이미 1992년 2월 남포공업단지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경공업분야(의류, 봉제완구, 신발, 가방, 장식품)에 대한 남한의 합작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해외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남한의 제조업 중 대표적인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시설이전이 용이하다. 북한은 남포지역을 경공업 중심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특히 남한전용공단을 마련한다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제1의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물론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고 임가공교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신의주와 개성 등에 물자교류의 중개지 역할을 담당할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 또는 휴전선 인근지역에 설치될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교역이 직교역으로 전환될 때 육상중개기지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남한의 기술, 정보,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는 장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금강산 일원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관광자원의 개발도 추진·가능할 것이다. 이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 산과 바다, 4계절이 뚜렷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설악산과 연계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할 때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홍콩의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금강산관광개발과 관련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³⁴⁾

나. 기존 개발계획 조정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국제화물 중계기지 내지 수출가공기지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총 91건의 프로젝트에서 외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외자유치 희망 프로젝트는 국제공항을 포함한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23건과 공업부문 68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지대 내에 광범한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 아래 북한은 공업부문 외자유

34) 홍콩의 Raine Horne & lau사는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으로부터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한 조사를 의뢰받아 금강산관광개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of Kumgansan Tourist Development) 결과보고서를 1993년 3월 북한에 제출하였다.

치 프로젝트의 약 53%에 해당하는 36건을 중공업부문에 배당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투자하기 보다는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건설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북한이 국내자본의 동원이 어렵고 낮은 대외신용도 때문에 국제금융 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 또한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방식으로서의 합작 또는 합영 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나진·선봉지대의 사회간접자본 공사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한편 나진·선봉계획은 해외경제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사회간접자본 건설뿐만 아니라 공업부문의 다양한 업종에서 외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부문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이들 업종에 대한 외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 내의 업종별 예상 평균투자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도 외자유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나진·선봉지대 내의 외자유치 업종을 재조정하고 투자규모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추가설치는 이러한 업종 재조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남포지역은 경공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은 남북한 물자교류의 중계기지로, 금강산지역은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지역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특화하여 육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업종간의 투자 우선순위 및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이에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장경제원리 도입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체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의 자주권과 시장메카니즘 등 자본주의 요소들이 폭 넓게 적용되는 곳이다. 중국은 대외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특구를 연안지역에 설치하였으나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면서도 중국식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해 주민이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험 자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개방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일련의 외자유치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앞서 제시된 국내경제의 시장경제화 조치와 같은 내부개혁은 함께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경제회생보다 체제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시장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특수지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했다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지대 내에서 만이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과 같은 과감한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활동이 북한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 지대의 성패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러한 환경하에서 외자유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지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될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성공여부는 북한 당국이 지대에 대해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원리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제 VI 장 맺음말

합영사업을 통한 북한의 외자유치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낮은 대외신용도, 경직된 경제관리운영체계,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좁은 내수시장 등은 투자대상 후보지로서의 매력을 외국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북한의 투자환경은 저임노동력과 일부 자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인접한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비교하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흡한 투자환경을 북한이 지금 당장 바꾸어 놓을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설치한 이후에도 1970년대 중반 이래 누적되어 온 서구 선진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제관리운영체계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낮은 대외신용도 및 경직된 경제관리운영체계 등은 북한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북한이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북한은 에너지 및 원자재를 자유경제무역지

대 내에 우선 공급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외자유치 분야를 경쟁력있는 수출산업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좁은 내수시장과 관련한 투자여건에서의 불리함을 비껴갈 수도 있다.

북한은 1992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외자유치 관련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오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이 더욱 보강되어야 하겠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이미 외자유치를 위한 골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 단지 개방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부개혁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투자환경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대외개방을 시작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환경이 미흡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계기로써 개방을 선택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안고 있는 투자환경면에서의 불리한 점들이 외자유치를 근본적으로 제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추진해 온 대외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의 성과가 부진했던 원인은 투자여건상의 불리함보다는 다른 곳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면서도 북한은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지속해 왔다. 더구나 개방에 걸맞는 내부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방과 개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없는 투자여건상의 불리함을 다소라도 만회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내부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내부개혁과 함께 북한이 앞서 언급한 대외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대미·대일 경제관계의 개선과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추진하고, 무역제일주의의 관철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대의 추가지정, 기존 계획의 조정 및 지대 내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면 북한의 경제회생이 회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당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金尙謙.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金益洙 編.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대한 分野別 評價」.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나라정책연구회 편.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전략」. 서울: 나라정책연구회, 1994.

金道卿·申愍榮.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서울: 렉키금성經濟研究所, 1992. 4.

삼성경제연구소.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1992. 12.

외무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1993. 6.

_____. 「北韓의 開放 可能性 -對外 經濟關係를 中心으로-」. 1990.

제일경제연구소. 「南北韓 經濟協力과 企業의 對應戰略」. 1991. 8.

曹東昊·崔炳善. 「南北韓 示範的 經濟協力事業의 推進方案」.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4.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안내」. 1993.

- 최수영.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2.
-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1994. 9.
- _____. 「북한의 제3차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 _____. 「北韓의 經濟와 貿易 展望 -'89年 回顧와 '90年 展望-」. 1990.
- _____. 「北韓의 經濟와 貿易의 展望」. 1992. 12.
- 韓國開發研究院. 「전환기의 북한경제」. 1994. 10.
- _____. 「北韓經濟動向 (1994年度 上半期)」. 1994. 8.
- _____.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1991年版-」. 1992.
- _____. 「南北韓 經濟協力の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 開發計劃」. 1992. 6.
- _____.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 1991. 10.
- 韓國産業銀行. 「南北韓産業의 構造 比較 -北韓産業의 構造的 問題點 中心-」. 1994. 6.
- _____. 「北韓의 産業投資環境과 對北韓 投資戰略」. 1993. 12.
-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1991. 9.
- 한국무역협회. 「北韓의 合作投資制度 -北韓의 合營法規-」. 1991.
- 現代經濟社會研究院. 「北韓과 日本의 經濟協力과 對應 方案」. 1992. 2.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easibility Study*

of Kumgansan Tourist Development. 1993. 3.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lden Triangle: Rajin-Sonbong. 1993.

2. 논문

高日東. “南北韓 經協의 推進方向과 政策課題.” 「北韓의 投資環境과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9.

宮塚利雄. “北韓의 合營事業과 日本企業.” 「北韓의 投資環境과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9.

_____.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在日朝鮮人との合弁事業を中心に-.”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2年版-」.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2.

權栗.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現況과 展望.” 「지역경제」, 제2권 제5호 (1993. 5).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년 2호).

김성훈. “南·北韓 經濟交流·協力과 政府의 役割.” 「南北韓 經濟 교류와 투자전망」. 서울: 한세정책연구원, 1994.

- 김승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전망에 관한 연구.” 「'92 北韓統一研究 論文集(2): 北韓의 政治經濟展望 對南政策 分野」. 서울: 국토통일원, 1992.
- 金永信. “南北經協의 展望.” 「北韓研究」, 제3권 제4호 (1992 겨울).
- 裴鐘烈. “北韓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 方向.” 「輸出入銀行 調查月報」. 1993. 5.
- 延河淸. “南北韓 貿易成果指數 比較로 본 經協方案 考察.” 「韓國開發研究」, 제15권 제3호 (1993 가을).
- _____. “北韓의 開放展望과 南北韓 經濟協力.”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 玉城素. “日本의 對北韓 經濟協力.”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 유진수. “북한의 경제현황 및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13권 제3호 (1992. 6).
- 全洪澤. “北韓의 投資環境과 對北投資戰略.” 「北韓의 投資環境과 南北韓 經濟協力の 政策課題」.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9.
-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統一研究 論叢」, 제3권 1호 (1994).
- _____.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南北韓 經濟교류와 투자전망」. 서울: 한세정책연구원, 1994.

_____. “북한의 경제정책과 개발전략.” 「北韓研究」, 제3권 제4호 (1992 겨울).

Lee, Hy-Sang.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Domest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1990's, Sponsor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Unification Board (July 12-14, 1991).

Clifford, Mark. “Opening up the Cla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6, 1992).

3. 기타

「内外通信」.

대한무역진흥공사. 「北韓通商情報」.

「週刊朝鮮」.

「中央日報」.

「한겨레신문」.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Time.

Vantage Point.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핀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研究報告書 94-1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